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5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18. 10. 25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0. 15.
- 회부일 : 2018. 10. 19. (의안번호 :18 - 87)

2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 정의 등(안 제1조 ~ 제5조)
-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4조)
-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16조 ~ 제30조)
-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 ~ 제40조)
-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
(안 제41조 ~ 제49조)
- 재난예방 및 대비, 대응, 복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0조 ~ 59조)
-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(안 제60조 ~ 67조)

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현행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지역 주민의 재난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본 조례안은 총 5장 6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장(총칙)에서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, 정의, 구의 책무, 구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2장(재난 및 안전관리기구)에서는 안 제1절부터 안 제5절까지 안전관리위원회, 재난안전대책본부,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, 재난안전상황실,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운영사항은 상위법을 근거로 규정하였음.
- 안 제1절(안전관리위원회)은 법 제11조(지역위원회)에 근거한 사항으로 안 제6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)부터 안 제15조

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)관련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, 안 제15조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)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민관이 상호보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음.

- 안 제2절(재난안전대책본부)은 법 제16조를 근거로 안 제16조 (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)부터 안 제30조(위기경보의 발령 요청)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24조(상황판단회의), 안 제26조(대책본부회의), 안 제27조(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)등은 각 회의체를 구분하여 구성과 기능을 전문화·세분화하였고, 안 제25조(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)는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 요청, 파견근무자의 교육, 훈련, 성실한 임무수행 등을 규정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3절(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)은 법 제16조제3항에 근거로 안 제31조(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부터 안 제32조 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)까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의 설치 및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4절(재난안전상황실 등)은 법 제18조를 근거로 안 제41조 (재난안전상황실 설치)부터 안 제42조(상황실 기능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안 제5절(안전관리자문단)은 법 75조를 근거로 안 제43조(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부터 안 제49조(간사 등) 까지 자문단의 기능 및 임원의 임기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3장(재난예방 및 대비)은 안 제50조(재난예방조치)부터 안 제56조(동원체계의 구축 등)까지 규정하였음.
 안 제51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)는 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긴급안전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,
 안 제52조(재난위험요인의 신고)는 주민이 행정기관 등에 재난 위험요인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, 안 제55조(대피소의 관리)는 대피시설의 설치, 정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음.
- 안 제4장(재난대응 및 복구)은 안 제57조(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)부터 안 제59조(복구활동 등)까지로, 재난 상황의 보고 응급대응조치, 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5장(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)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안 제60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부터 안 제67조(수당 등)까지로,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를 조성하고,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내용으로는

본 조례안은 재난상황을 재난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재난수습을 효과적으로 계획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,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예방 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재난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